

답 변 서

사 건 2018재누297 재심청구의 소

[담당재판부:제6행정부]

재심원고(원고) 임그루

우편번호 3632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
휴대폰 010-2878-2177

재심피고(피고)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
우편번호 04147

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(피고보조) (주)KT 대표이사 황창규

우편번호 13606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 제출합니다.

내 용

①.고등법원 때 제출한 증거 30호를 보시면 회사 사규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시면 부당한 업무에 항의해 전화번호 지정 개선시킨 쾌심 죄로 사규(증거 30호증)를 활용하지 못 하게하여 억지

로 징계처리 했습니다. 즉 피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②.피고는 '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.' 고 주장하고 판결문에도 그런 이유로 기각 혹은 각하 했습니다.

여러 번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승복한다고 했습니다.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과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기록되어있으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.

③.그동안 증거 목살 한 것 아닙니까? 2012재누172 사건 이후에는 변론 없이 기각 각하 판결을 했었는데, 이번에는 변론을 해서 진실이 밝혀지려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. 제출된 증거와 주장내용 잘 살펴 주셔서 판결 해 주십시오. 하는 마음에 답변서를 냅니다.

첨부: 총 3부

2018. 12. .

재심원고 임 그 루

서울고등법원 귀중